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

소비자는



보도	2026.5.4.(월) 석간	배포	2026.4.30.(목)		
담당부서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1팀	책임자	팀장	장종현	(02-3145-8129)
		담당자	선임	김유홍	(02-3145-8283)

일상 속 불법금융광고, 국민의 눈길로 찾는다

- '26년 시민감시단 274명 전국 규모로 확대 운영, 온·오프라인 제보 강화 -

< 개요 >

-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광고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'26년 불법금융광고 시민감시단을 총 274명 규모(온라인 156명, 오프라인 118명)로 구성하여 5월부터 7개월간 운영합니다.
- 특히, 올해는 SNS·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으로 옮겨간 신종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감시단을 대폭 확대('25년 55명 → '26년 156명)하였습니다.

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

①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하면 적극 제보해 주세요!

- (불법사금융) "누구나 당일 대출", "신용불량자 OK" 등 미등록 업체 광고
- (통장매매·카드깡) "통장 삽니다", "신용카드 현금화" 등 통장·카드 매매 광고
- (불법금융) 작업대출, 소액결제 현금화, 개인신용정보 매매, 불법 채권추심 등

☞ 제보방법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→ 불법금융신고센터 →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

② 불법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발생시 경찰청(☎112) 또는 금융감독원(☎1332)으로 신고하세요!

③ 불법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범죄를 알고 계신가요?

- 구체적 혐의사실과 증빙자료(계약서, 녹취, 이체내역 등)를 갖추어 신고하면 누구라도 「불법금융 파파라치」 포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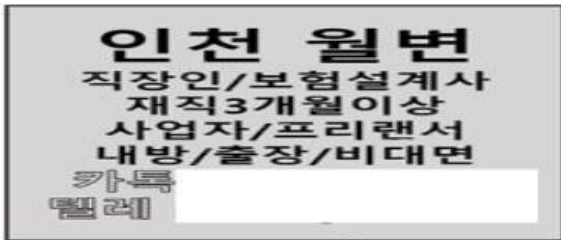
※ 일반 제보 최대 2천만원, 내부 제보자는 최대 4천만원

1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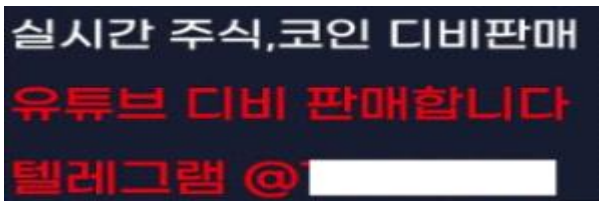
- 금융감독원은 '14년부터 불법금융광고 시민감시단을 운영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 광고를 상시 제보받아 관련기관에 차단을 의뢰해 왔습니다.
- 그러나 최근 불법금융광고의 주 유통경로가 전단지 등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, 특히 은어와 해시태그를 활용한 교묘한 광고가 확산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.
- 이에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, 온라인 감시 역량을 집중 강화하여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.

[시민감시단 제보대상 유형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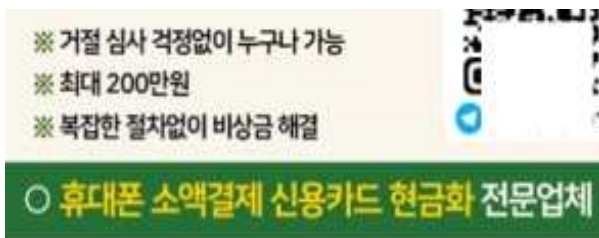
①미등록 대부



③신용정보 매매



⑤소액결제 현금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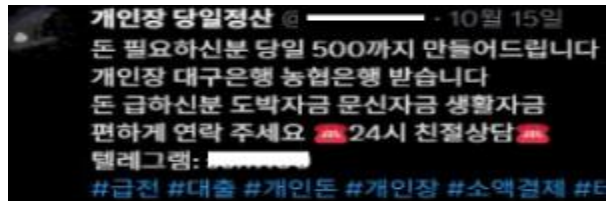
⑦불법 유심매매



②신용카드 현금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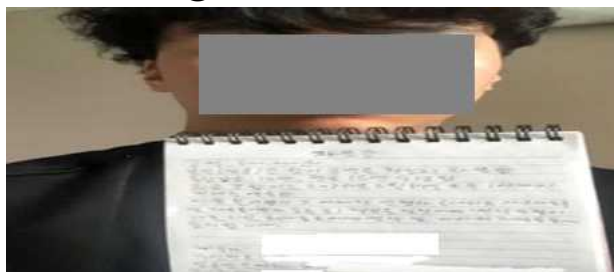
④통장매매



⑥작업대출



⑧불법 채권추심



※ 오프라인 감시단은 전단지·명함형 광고 특성을 반영하여 미등록 대부 유형을 중점 제보

2

주요 내용

- **(활동 내용)** 시민감시단은 5.1. ~ 11.30. 7개월간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불법금융광고를 제보하고, 금융감독원은 이를 검증하여 방송미디어통신 심의위원회·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기관에 차단을 의뢰합니다.
- **(온라인 중심 재편)** 온라인 감시단을 '25년 55명에서 156명으로 약 3배 대폭 확대하였습니다.
 - 새로 합류한 감시단은 SNS·숏폼 등 온라인 매체에 익숙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신종 불법금융광고를 정교하게 포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**(오프라인 감시 지속)** 전단지·명함형 광고 등 오프라인 불법금융광고 또한 여전히 유통되고 있으므로 118명의 감시단이 활동을 지속합니다.
 - 오프라인 감시단은 지역사회에 밀착한 생활권 감시를 수행하며, 디지털 취약계층이 노출되기 쉬운 전단지형 광고를 현장에서 직접 발견·제보합니다.
- **(기대효과)** 시민감시단 재편으로 온라인 감시 역량이 강화되어 SNS·숏폼 등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신종 불법금융광고의 조기 발굴·차단 기반이 마련되며,
 -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*와의 유기적 연계로 국민 참여형 제보 채널이 다층화되어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사금융, 불법 핀플루언서,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등을 제보 받아 피해규모 및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제보자에게 포상하는 제도

3

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기존 운영중인 AI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시민감시단,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연계하여 시민의 눈과 기술이 결합된 입체적 감시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.
 - 앞으로도 국민 참여와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불법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1**신고요건**

- 불법사금융·불법 금융투자·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**혐의사실**(위반행위자, 장소, 일시, 방법 등)을 적시하고 관련 **증빙자료***를 첨부하여 신고

* 공시자료,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

- 제보된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**증빙자료**가 부재한 경우 불법 금융행위 혐의 판단이 곤란함을 유의

2**신고방법**

-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 > 민원·신고) '불법금융신고센터' 또는 1332(→3번)를 통해 제보·신고 가능

- ① **(불법사금융·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)**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신고·제보*

* [불법사금융] 금전차용증서 등 대부계약서, 채권자 인적사항, 대화내역 및 녹취록 등 [유사수신] 투자설명회 자료, 투자계약서, 녹취록, 대화내역, 자금 이체내역 등

※ 불법스팸문자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(☎118, spam.kisa.or.kr)로 신고

- ② **(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)** 등록 대부중개업체 등의 대출중개 수수료 편취에 대한 피해신고·제보*

* 혐의자 인적사항, 녹취록, 대화내역, 자금 이체내역 등

- ③ **(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)** 무인가 투자중개업, 미등록 투자자문업 등 불법금융투자업에 대한 신고·제보*

* 불법 사이트 URL, 투자계약서, 대화내역, 자금 이체내역 등

[참고]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내 신청 화면

<p>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(fss.or.kr > 민원·신고)</p>	
<p>② '불법금융신고센터' 클릭</p>	
<p>[불법사금융·유사수신 신고]</p> <p>③ "제보 상담하기" 클릭</p> <p>④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 및 본인인증 후 "다음단계" 클릭</p> <p>⑤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입력 후 "등록" 클릭</p>	
<p>[불법대출중개수수료 신고]</p> <p>③ "신고하기" 클릭</p> <p>④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 및 본인인증 후 "다음단계" 클릭</p> <p>⑤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입력 후 "등록" 클릭</p>	
<p>[불법금융투자업 신고]</p> <p>③ "제보하기" 클릭</p> <p>④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 및 본인인증 후 "다음단계" 클릭</p> <p>⑤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입력 후 "등록" 클릭</p>	